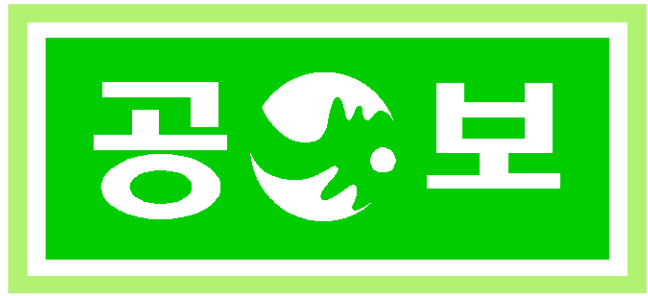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람	기 관 의 장

제 1042 호 2016. 12. 22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206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211호[2017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213호[도로명주소 고시]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214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7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1257호[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공고] 9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 - 206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명춘천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명 : SK건설(주)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-18
3. 점용 목적 및 개요
야적장을 위한 점용(공사용 가도 및 자재야적장 조성)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치 : 효분동 886-5번지 외 1필지 (886-6번지)
나. 면적 : 일시 712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일시: 2017.01. 01. ~ 2017.12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6-211 호

2017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7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12. 22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의회 의결일자 : 2016. 12. 15.

□ 2017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전년도예산액		비교증감		
		구성비	구성비	증감률	증감률	
총 계	265,513,376	100.00%	246,550,411	100.00%	18,962,965	7.69%
일반회계	260,367,698	98.06%	245,233,114	99.47%	15,134,584	6.17%
특별회계	5,145,678	1.94%	1,317,297	0.53%	3,828,381	290.62%
기타특별회계	5,145,678	1.94%	1,317,297	0.53%	3,828,381	290.62%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40,220	0.05%	145,432	0.06%	△5,212	△3.58%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82,100	0.29%	38,800	0.02%	743,300	1915.72%
주차장특별회계	4,223,358	1.59%	1,122,582	0.46%	3,100,776	276.22%

□ 일반회계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장·관	예산액	구성비	전년도예산액	구성비	비교증감	
					증감률	증감률
총 계	260,367,698	100.00 %	245,233,114	100.00 %	15,134,584	6.17%
100 지방세수입	63,380,000	24.34 %	53,370,000	21.76 %	10,010,000	18.76%
110 지방세	63,380,000	24.34 %	53,370,000	21.76 %	10,010,000	18.76%
200 세외수입	18,312,407	7.03 %	17,384,949	7.09 %	927,458	5.33%
210 경상적세외수입	16,758,545	6.44 %	15,688,349	6.40 %	1,070,196	6.82%
220 임시적세외수입	1,553,862	0.60 %	1,696,600	0.69 %	△142,738	△8.41%
300 지방교부세	4,030,000	1.55 %	3,221,000	1.31 %	809,000	25.12%
310 지방교부세	4,030,000	1.55 %	3,221,000	1.31 %	809,000	25.12%
400 조정교부금등	43,934,080	16.87 %	38,190,607	15.57 %	5,743,473	15.04%
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	43,934,080	16.87 %	38,190,607	15.57 %	5,743,473	15.04%
500 보조금	127,253,051	48.87 %	121,445,710	49.52 %	5,807,341	4.78%
510 국고보조금등	80,352,783	30.86 %	77,154,786	31.46 %	3,197,997	4.14%
520 시·도비보조금등	46,900,268	18.01 %	44,290,924	18.06 %	2,609,344	5.89%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3,458,160	1.33 %	11,620,848	4.74 %	△8,162,688	△70.24%
710 보전수입등	3,000,000	1.15 %	11,200,000	4.57 %	△8,200,000	△73.21%
720 내부거래	458,160	0.18 %	420,848	0.17 %	37,312	8.87%

□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구성비	전년도예산액	구성비	비교증감	
					증감률	증감률
총 계	260,367,698	100.00 %	245,233,114	100.00 %	15,134,584	6.17 %
010 일반공공행정	14,940,654	5.74 %	15,672,648	6.39 %	△731,994	△4.67 %
020 공공질서및안전	1,388,250	0.53 %	1,666,204	0.68 %	△277,954	△16.68 %
050 교육	568,448	0.22 %	600,570	0.24 %	△32,122	△5.35 %
060 문화및관광	23,122,327	8.88 %	15,992,864	6.52 %	7,129,463	44.58 %
070 환경보호	9,644,533	3.70 %	8,252,990	3.37 %	1,391,543	16.86 %
080 사회복지	114,872,161	44.12 %	111,240,121	45.36 %	3,632,040	3.27 %
090 보건	8,975,838	3.45 %	7,611,761	3.10 %	1,364,077	17.92 %
100 농림해양수산	17,332,874	6.66 %	15,928,476	6.50 %	1,404,398	8.82 %
110 산업·중소기업	1,123,127	0.43 %	947,637	0.39 %	175,490	18.52 %
120 수송및교통	7,047,236	2.71 %	8,908,513	3.63 %	△1,861,277	△20.89 %
140 국토및지역개발	11,924,051	4.58 %	10,552,650	4.30 %	1,371,401	13.00 %
160 예비비	3,117,490	1.20 %	3,230,969	1.32 %	△113,479	△3.51 %
900 기타	46,310,709	17.79 %	44,627,711	18.20 %	1,682,998	3.77 %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 - 213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1길 4(양정동) 외 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석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12. 2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10-9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4(양정동)	2016-12-22	양정이란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의 이 지역 내부 시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	2004-01-05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지구 106B 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준15길 3(명준동)	2016-12-22	명준이란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3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물류2단지 6B 3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로 43(진장동)	2016-12-22	진장 유동단지의 유동관저 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1-23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-214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1길 13(양정동) 외 1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석과 (☎052-241-7583,7585)**에 문의 또는 **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** 및 **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**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6. 12. 22**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1길 13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10-9	2016-12-22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명춘15길 3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1068 1L	2016-12-22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6-1257호

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공고

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가점제 비율에 대하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12. 22.

울산광역시 복구

- 1. 제 목 : 85제곱미터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공고
- 2. 지정근거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항제3호
- 3. 공고기간 : 2016. 12. 22.~2017. 1. 11. (공고일로부터 20일간)
- 4. 공고내용

<p>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8조제2항제3호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: 40퍼센트</p>
--

- 5. 공고방법 : 울산광역시 복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, 구보 게재
- 6. 상기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축주택과(☎052-241-80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